



# 한·칠레 FTA 관련 정부 농업지원 대책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지난 2월 16일 한농연 및 농민들의 비준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국회는 작년 12월 말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16일에는 농가부채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아울러 2월 17일 국회 농해수위는 FTA이행특별법을 통과시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한-칠레 FTA 비준 직후 「FTA 관련 농업지원 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정부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농연은 일선 회원과 지역 농촌 현실 속에서 새 농가부채 대책의 적용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검토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농가부채 대책의 후속 보완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월간 한농연」에서는 정부 FTA 농업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문답식 해설을 곁들여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1.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농림부는 지난 16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 공포 전까지 부채경감대책내용·지원절차·신청방법 등을 담은 세부사업 지침을 확정, 2월 말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세부사업지침에 금융자산 과다보유 등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농협 지역본부·시군지부·조합에 부채 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부채경감 신청 접수는 법 시행일로부터 5월31일까지 전국의 조합과 시군지부에서 하게 되며 농업인이 부채경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 곧바로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기존 정책자금 금리 4%에서 1.5%로 인하 및 상환기간 최장 20년 연장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 6.5%에서 3%로 인하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상호금융 대출금 가운데 농업용 자금 금

리 3%포인트 인하 ▲신규정책자금 금리 4%에서 3%로 인하 ▲연대보증 피해자금 상환기간 최장 20년 연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시행되면 올 한 해 농가부채 경감액은 7,500억 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채경감 대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향후 농림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부사업지침에서 정해 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농가부채경감 대책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질문 : 현재 농가가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부채 경감은 어떻게 이뤄지나?**

⇒ 부채경감 대상자금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대출받은 정책자금으로서 올해 1월 1일부터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다. 다만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 정책자금에 국한하고,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성 자금은 제외된다. 이자(금리)는 법 시행일부터 4%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최장 20년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질문 : 지난 2000년 5월 1일 정책자금 1,000 만원을 금리 4%,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지금까지 100만원을 갚고 900만원이 남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법 시행일로부터 적용된다. 해당농가가 법 시행일 이후 농협에 부채경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곧바로 지원혜택을 받는다. 즉, 원금 9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4%에서 1.5%만 납부하면 된다.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질문 :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 자금의 구체적인 금리 인하 대상은?**

⇒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은 2001년 농가부채경감 대책 당시 이자를 6.5%로 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가운데 2003년 말 현재 갚지 못한 자금이 지원대상이다. 농업경영개선자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이자를 6.5%로 지원 받은 농업경영개선자금 중 2003년 말 현재 미상환 자금이다. 이번 대책으로 상환이자는 법 시행일부터 6.5%에서 3%로 낮아지기 때문에 해당 농가는 상환해야 할 원금의 이자를 3%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의 상환기간은 종전과 같이 오는 2006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변동이 없다.

**질문 : 농가의 상호금융자금 중 70%에 해당하는 농업용 자금의 이자를 낮춰준다고 하는데?**

⇒ 정부는 지난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한 처리때 농업인 추가지원대책으로 이 같은 부채경감대책을 내놓았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3년 말까지 4년 동안 농가가 대출 받은 상호금융자금 가운데 70% 정도인 농업용 자금에 대해 이자를 현재 평균 8% 수준에서 3%포인트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전체 상호금융 자금 중 70% 수준을 정

한 것은 가계자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농업용으로 사용한 것만을 부채경감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2001년 부채대책 당시 농가가 농업용으로 대출받은 상호금융 자금이라도 실제로 가계성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 전체 대출금 가운데 가계성 자금을 제외한 70%만을 농업용으로 인정했었다. 이를 준용한 것이다.

정부는 세부사업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잔액의 10%를 납부해야만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질문 : 정부의 상호금융자금 금리 인하 방침 속에 나온 '역마진'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

⇒역마진이란 정부가 농업용 자금으로 쓴 상호금융자금의 이자를 낮출 경우 조합의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느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이자가 7.5%이고 예금이자 4.8%일 경우 정부가 대출이자를 3%포인트 낮춰주면 대출이자가 4.5%로 예금이자보다 오히려 0.3%포인트가 낮아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생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질문 : 농가가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경우 특별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농가가 대출받은 정책자금을 이번 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정상상환할 경우 1년간 납부한 상환 이자의 40%를 되

정책구분	개 정 내 용
일반 상호금융자금	- 대상 : 2000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대출된 농업용 자금 - 금리 : 연리 5%(대출 잔액 10% 이상 상환 농민에 한해) - 상환기한 : 지원일부터 5년 이내
이미 대출된 정책자금	- 금리 : 연리 1.5% - 상환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신규 대출 정책자금	- 금리 : 연리 3%
농업경영개선자금	- 금리 : 연리 3%, 조건 없음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	- 금리 : 연리 3%, 조건 없음
연체해소자금 지원조건	- '농가부채특별법 시행일 현재 연체하고 있는 농민'으로 수정
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	- 상환기간 :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정책자금 조기 상환 농가 이자 환급	- 제때 혹은 조기상환시 이자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 대상 : 재해, 가축질병, 적조, 농수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의 경영안정 - 자금 확보 : 2천억원 - 금리 : 연리 3% - 상환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농가가 1,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이자 4%,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약정한 상환기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1년간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받게 된다. 물론 이 농가의 정책자금 이자율은 법 시행일부터 1.5%를 적용 받는다. 정부는 약정한 상환기간보다 1년 이상 일찍 상환할 경우 상환원금에

대해 납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되돌려준다.

(자료 출처 : 농민신문 2004. 2. 20)

\*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8~9) / 혹은 한농연중앙연합회(☎02-3401-6543)으로 해주십시오.

## 2.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정책구분	개정내용
농특세 징수기간 연장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
재원 확보 계획	10년간 20조원 확보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제정

정책구분	개정내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 매 5년마다 - 시행계획 : 매년 담당부처 장관이 수립·시행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구성	- 구성 : 국무총리 산하 위원장 1인을 포함 25인 이내 - 기능 : 농어민 복지 증진·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지역 개발 관련 정책 총괄·조정, 기본계획 심의, 추진 실적 점검·평가
법안의 주요 내용	농어촌 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지원</li> <li>-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li> <li>-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지원</li> <li>- 농산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li> <li>- 농산어촌 경관 보전, 향토 산업 진흥</li> <li>- 농산어촌 정보화 촉진</li> <li>- 문화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li> </ul>
	농어촌 교육 환경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 학교 학생 학습권 보장</li> <li>- 농산어촌학교 교직원 지원</li> </ul>
	농산어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li> <li>- 해당 계획 추진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li> </ul>

#### 4. 119조원 농업투융자 계획

- (1) 정부 농업투융자 계획 개요
- 농업체질 강화에 중점 지원
    -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구조 재편
    - 경쟁 탈락 농가 대상 보완대책 마련
  - 직불제 강화·재해보험 확대·경영회생 지원 관련 투융자 확대
    - 직불제 예산비중을 '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 이상으로 확대
  - 사회안전망 확충·복지서비스·농촌개발 투융자 비중 확대
    - 농어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 확충
    - 교육·의료 등 복지서비스
    - 농촌종합개발 관련 투융자 비중 확대
  - 농업생산기반사업 투융자 비중 축소
- (2) 농업투융자 계획 주요 내용
- 2004~2013년 기간 동안 119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자
    - 전반기 5년간('04~'08)의 투융자규모 51조원은 정부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반영

- 연도별 투융자 규모 : ('04) 8.4조원 ('05) 9.6 ('07) 10.7 ('08) 11.4

- 119조 투융자계획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만 반영
  - 과거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달리 순수한 중앙정부 투융자만을 계상
  - 투융자 계획은 3년 단위로 평가·보완하여 실효성 제고

#### 5. 직불제 강화 및 확충

- 경영이양직불제 강화
    - 지원연령 : 현행 69세까지에서 72세까지로 연장
    - 70세~72세 연령층은 1회 일시불 지급,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직불제 지원 연차적 강화 : 정책 선언적 의미
    - 119조원 농업투융자 계획 중 각종 직불제를 연차적으로 강화
- ⇒ 친환경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생산조정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등

● 표 : 분야별 투융자 규모 및 비중

(단위 : 십억원, %)

분야별	2003	비중	2008	비중	'04~'08	비중	연평균 증감율
합 계	7,704	100.0	11,391	100.0	50,514	100.0	7.8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2,439	31.7	4,248	37.6	18,453	36.5	11.4
• 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1,556	20.2	3,136	27.5	12,924	25.6	12.6
• 직접지불 사업	671	8.7	2,592	22.8	9,245	18.3	31.7
•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557	7.2	1,578	13.9	6,140	12.2	19.0
• 농산물 유통개선	637	8.3	1,017	8.9	4,999	9.9	2.7
•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5	32.6	1,376	12.1	7,998	15.8	9.1

## 6. FTA이행특별법 및 FTA농업지원대책

### (1) FTA이행특별법 제정

-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관련 지원책 마련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규모 확대, 생산기반 정비, 고품질 생산·유통 등
  - 직접 피해발생 품목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폐업 지원 등
- FTA이행특별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
  - 한·칠레 FTA에 대비 7년간 1조 2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 기금 재원 : 정부출연금 마사회 특별적립금 수입이익금·운영수익금 차입금 등

### ○ FTA이행지원위원회 설치

- 농림부 장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및 농어업인 등으로 구성(15인 이내)
- 지원기본방침, 재원조달대책, 협정이행사항 등에 관련된 사항 심의

### (2) FTA농업지원대책 및 관련 예산 확보 상황

- FTA 농업 피해 대책으로 총 1조 5,190억원 규모 지원
  - 보조 71%(국고 7,567억원, 지방비 3,188억원), 융자 29%(국고 4,433억원)
  - FTA이행특별기금 1조 2천억원 조성(국고보조 및 융자재원으로 사용)

## ● FTA 관련 예산 증액 내용

### (1) FTA 직접 관련 예산 : 5,041억원

정책구분	2004년 지원 금액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6.5% 3%)	2,067억원 * 상호금융대체자금 : 1,548억원 * 농업경영개선자금 : 519억원
농신보 추가 출연금	978억원
신규 정책자금 금리인하(4% 3%)	396억원
FTA이행특별기금 출연	1,600억원

### (2) FTA 관련 추가 지원 예산 : 498억원

정책구분	2004년 지원 금액
RPC 운영자금 금리인하(4% 무이자 자금)	273억원
RPC 건조·저장시설(보조 비율 10% 상향 조정)	36억원
고교생학자금 및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ha미만 1.5ha)	89억원 *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 41억원 * 영유아자녀양육비 : 48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규 도입	100억원

- 대부분의 사업은 50~100% 보조, 규모화 위한 과원매입은 용자 지원
- 경쟁력 향상 가능 과수 농가에 1조 3,222억원 지원
- 시설 현대화, 과원규모화, 수출단지 기반 등 고품질 생산 지원
- 산지유통시설, 우량묘목 생산 등 생산자조직 지원

- 관세철폐 품목의 수입 증가로 농가 피해 발생 시 경영 안정 지원
- 폐업 희망 농가에 폐업 보상금 등 1,868억원 지원
- 폐업 여부 확인 후 일정 기간(폐원 3년간, 매 1년간) 순소득 지원
- 재해보험, 자조금, 유통활성화 자금 등 현행 지원사업 지속 확대

한농연 만평

김희승

